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	의 원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
예방에 관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권영숙 의원 외 5인
- 제출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-146)

2. 제출이유

마포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마.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
- 바.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 대여 근거를 정함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15. ~ 2020. 10. 19.
- 2) 관계법령 : 붙임.

5. 검토의견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르면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” 하도록 정하고 있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서는 “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구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마포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에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, 안 제7조에 실태조사,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본 조례안과 관련된 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”는 서울시에서는 구로구, 양천구, 강북구 3개구에서, 전국적으로는 3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상위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[관계법령]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중화장실법)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개인정보 보호법

[시행 2020. 8. 5] [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, 일부개정]
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도소,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·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"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3. 29.>

1. 설치 목적 및 장소
2. 촬영 범위 및 시간
3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